

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[별표 4의2] <신설 2023. 6. 7.>

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(제21조의2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실험실, 기기실 및 사무실은 각각 구분·구획되어 있어야 한다.
- 나.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, 실험실, 기기실 및 사무실은 임차(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)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지정권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.
- 다.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기술자격자의 경우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.
- 라.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.
- 마.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.
- 바.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 10호에 따라 고시된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(이하 "공정시험기준"이라 한다)에 따른 시험기준별로 지정항목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을 기본항목(이하 "기본항목"이라 한다)으로 하여 지정받아야 한다.

2.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

가. 시설 및 장비 기준

구분	시설 및 장비명
시설	1)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: 60제곱미터 이상 2) 항온·항습시설을 갖춘 기기실: 40제곱미터 이상 3) 사무실: 40제곱미터 이상
분석장비	1) 기본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)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프-질량분석계(분해능 10,000 이상으로 다이옥신 정량용 프로그램을 갖춘 것을 말한다): 1대 이상

	<p>나) 속슬렛 추출장치: 4세트 이상</p> <p>다) 정제용컬럼: 4개 이상</p> <p>라) 회전증발 농축기 또는 질소 농축기: 1세트 이상</p> <p>마) 시료냉장보관설비(4℃이하): 1대 이상</p> <p>2) 기본항목 외의 시험기준을 추가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</p> <p>가) 1)가)부터 마)까지에 따른 장비</p> <p>나)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방법별 장비</p>
시료채취 장비	<p>1) 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</p> <p>가) 먼지포집부, 기체흡수부 및 기체흡착부: 각각 2세트 이상</p> <p>나) 배출가스 유속 및 유량측정부: 각각 2세트 이상</p> <p>다) 진공펌프 및 흡입기체 유량측정부: 각각 2세트 이상</p> <p>라) 배출가스분석기(Flue gas analyzer, 일산화탄소 및 산소측정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): 2대 이상</p> <p>2) 환경대기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: 고용량 공기시료채취기(여과지와 XAD-2 수지 또는 활성탄 수지 펠트 및 폴리우레탄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 3대 이상</p>

나. 기술인력 기준

구분	자격기준
분석인력	<p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</p> <p>1)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p> <p>2) 환경분야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4)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
	<p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</p>

	당 자	<p>1)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-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2) 환경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-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(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-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(보조경력을 포함한다)이 2년 이상인 사람</p>
시 료 채 취	채 임 자	<p>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</p> <p>1)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2)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4)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
인 력	담 당 자	<p>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</p> <p>1)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(보조경력을 포함한다)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2)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(보조경력을 포함한다)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(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(보조경력을 포함한다)이 2년 이상인 사람</p>